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13.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7명(이진환, 김정희, 정창근, 이선주, 박정환, 서보영)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1.(금) ~ 9. 7.(목)

2. 제안이유

-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구청장의 조치 의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4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9. 1. ~ 9. 11.)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 안 제2조는 구청장은 상위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금액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규정, 기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단일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분리하여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비비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사후적 통제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신중한 집행과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별도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하여 예비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 강화 등 의회 심의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서 예비비의 사용액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집행부의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